

---

## [후보자등록절차] 등록무효사유

---

-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
-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(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 의원의 경우 정수범위 초과 추천 가능),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,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규정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
- 등록대상재산신고서, 병역사항신고서, 최근 5년간의 후보자·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증명서,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
-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기간중(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) 당적을 이탈·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
(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·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)
-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
-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·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 
(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),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·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

-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
- 법 제57조의2(당내경선의 실시) 제2항 또는 제266조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 제2항 ·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
  - ☞ 법 제57조의2②

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. 다만,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· 사망 ·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·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
-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
-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
-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  
(이 경우 모두 무효로 됨)

※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